



# Code of Conduct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



# CONTENTS



Code of Conduct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

CEO Message .....	4
준법지원인 Message.....	5
구성원이 알아야 할 준법지침.....	6
준법지침 구성.....	10
<b>01.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b>	<b>13</b>
제품 안전 및 규격 .....	14
환경과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 .....	16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	18
<b>02. 구성원에 대한 책임 .....</b>	<b>21</b>
공정한 인사 관리.....	22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	24
안전한 작업 환경.....	26
<b>03.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추구.....</b>	<b>29</b>
경쟁사와의 관계 .....	30
경쟁정보의 수집 / 유출 .....	32
협력사와의 관계 .....	34
금품 제공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36
<b>04. 거래 질서의 존중 .....</b>	<b>39</b>
수출입 규제 .....	40
투명한 공급망 관리 .....	42
<b>05. 정보 및 기술의 보호 .....</b>	<b>45</b>
개인정보 보호.....	46
타인의 지식재산 보호.....	48
경영정보 보호.....	50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52
기록 관리 및 보존 .....	54
정보통신수단 이용 시 유의사항 .....	56

## CEO Message

구성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출범한 지 3년만에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을 이뤄오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미래를 차근차근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고객들의 일시적인 투자 연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는 지금을 내실 다지기의 기회로 삼고 압도적인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구성원의 모든 업무는 관련 법규, 사규 및 기업윤리를 준수하는 정당한 방법과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객, 협력사, 주주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데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인 ‘Comply’에서 파생된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ESG경영의 핵심 가치이자 기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기업의 신뢰 구축을 위한 고객가치제고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21년 배터리 업계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했으며, 23년 3월 ‘Compliance Portal’을 오픈해 전사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시스템화/DB화 하고 구성원 여러분에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주요 현안을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에 부의하고 심도있는 검토로 근본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부패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인 ISO37001 인증을 취득해 고객사 Audit, ESG 평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발맞추어 구성원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법규, 사규 및 기업윤리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컴플라이언스 교육, 점검 및 개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컴플라이언스 실천으로 ‘대체 불가능한 차별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월 (주)LG에너지솔루션  
CEO 김동명 사장

## 준법지원인 Message

준법지원인으로서 LG에너지솔루션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한지도 어언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국내 외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곧 컴플라이언스이며, 회사의 정책에 따른 업무 수행, 각종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구성원 여러분 모두는 이미 컴플라이언스 활동에 깊숙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1년 LG 계열회사 중 최초로 컴플라이언스 관련 국제 인증 (ISO37301)을 취득하였고, 이후 구축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23년 상반기에는 이를 전산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Compliance Portal' 을 오픈하고 공정거래, 정도경영, 환경안전, 정보보안 등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Risk 식별, 예방목표 수립, 모니터링, 점검, 교육 등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법지침서”란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최상위 규범으로, 이를 근간으로 하여 준법통제기준 등 컴플라이언스 각 영역별, 업무표준, 시스템 등을 수립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준법지침서 개편에 있어서 LG에너지솔루션 고유의 사업 현안과 직결되는 핵심 Risk 영역들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노력했고, 특히 관련된 사규, 업무표준, 시스템 등의 명칭 및 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실무적인 활용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구성원 여러분,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법지침서를 통해 업무적으로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Risk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법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법무실 등 유관부서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 6월 (주)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원인 / 법무실장 한웅재 전무

# 구성원이 알아야 할 준법지침

##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는 기존 LG그룹 공통의 준법지침서를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영위하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특성 및 품질, 중대재해, 경영정보 유출 등 최신 컴플라이언스 현안들을 추가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 LG에너지솔루션의 ① 모든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의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② 회사의 관련 절차 및 위반 사례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였으며, 특히 ③ 위반 행위 예방과 관련된 사규, 프로세스, 대응부서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왜 지켜야 하나요?

-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준법 정책 (=컴플라이언스 정책)의 기본 원칙들을 정하고 있는 최상위 규범으로, 회사 또는 구성원의 법규·윤리 위반에 따른 법적 Risk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컴플라이언스 관련 사규 (준법통제기준 및 그 시행규칙 등) 및 업무표준 (매뉴얼/가이드라인) 등은 모두 준법지침서에 기반하여 이를 구체화/상세화 한 것입니다.
- 우리는 준법지침서 및 사규, 기타 회사의 각종 준법 정책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회사 및 임직원 개인이 법적 Risk에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LG에너지솔루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 구성원은 G-Portal 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G-Portal → 전사 IT시스템맵 → 법무 → Compliance) 및 「ESM」의 사규, 업무표준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함과 동시에, 품질 기준 준수,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보전에 힘써야 하고, 바람직한 조직문화 구축, 공정한 사업 수행 등 업무의 모든 영역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실현해야 합니다.

## 누구를 위한 지침인가요?

- 본 준법지침서는 LG에너지솔루션 국내 사업장 소속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 우리의 의무

#### 01. 모든 구성원의 의무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구성원,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항상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준법과 관련된 회사의 각종 정책 및 사규, 업무표준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판단하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는 신속하게 상사 또는 유관부서에 자문을 구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준법지침서 등 회사의 사규, 각종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보고/제보합니다.

#### 02. 조직 관리자의 의무

- 소속 구성원들이 준법지침서 상의 각종 의무를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법지침서 준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고, 준법지침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의문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해야 합니다.
- 솔선수범하여 준법지침서를 준수하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합니다.

#### 03. 해외 법규의 적용

- 업무 관련 국내 외 법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법무실 등 유관부서에 질의하시어 전문 검토의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외 관련 법규도 적용되어 제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침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본 준법지침서 (준법지침서에 기재된 관련 법규 및 사규를 포함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및 위반자 개인 모두에게 법적 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형사처벌, 과징금, 과태료,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 포함), 몰수,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 손상 및 신용 하락에 따른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반자 개인에게도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 과태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는 본 지침과 관련 사규 및 법률에 근거하여 문제되는 구성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것만은 꼭!

#### 01. 회사 또는 다른 구성원의 준법지침 위반이 의심될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 일차적으로 해당 사안을 조직 관리자와 상의하십시오.
-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법무실, 정도경영 등에 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 제보가 필요한 경우, 신문고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02. 불이익 조치가 우려될 경우 즉시 제보해 주십시오.

- LG에너지솔루션은 준법지침, 법률 위반 사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불이익을 가한 자는 관련 사규에 따라 징계하고 있습니다.  
※ 불이익 조치로는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업무 배제 및 따돌림 등 괴롭힘 문제까지 다양한 양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주변에서 제보 관련 불이익 조치가 의심될 경우, 즉시 법무실, 정도경영 등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 제보가 가능하며, 비밀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03. 다음의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 준법지침서에 기재된 법률 및 회사의 사규, 정책을 위반한 자
- 타인에게 준법지침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시/강요한 자
- 위법 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자

#### 04. 아래의 경우에도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잘못된 일인 줄 알았지만, 상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 “고객을 위해 그랬습니다.”
- “회사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지침 활용 가이드

1. 본 준법지침서는 사규로서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최상위 규정에 해당합니다.
2. 본 지침에서 인용된 사규 및 매뉴얼 등 업무표준은 G-portal 내 “ESM(구 SDM)”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G-portal 내 전자 IT시스템맵 → 법무 → “컴플라이언스(CMS)”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법규/사규/업무표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컴플라이언스(CMS)” 시스템에서는 공정거래, 환경안전, 정보보안, 인사노무 등 LG에너지솔루션 사업과 관련된 “영역별 Compliance Risk”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라 Risk Pool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법무실 (준법사무국)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준법지침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나 수정 요청, 질의사항 등은 법무실 (준법사무국)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I. 고객과 사회에 대한 의무

- ❖ 제품 안전, 규격 및 관련 인증을 준수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을 확보합니다.
- ❖ '고객가치 증대'를 위해 고객에게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와 솔루션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에 기여합니다.



## II. 구성원에 대한 의무

- ❖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 ❖ 모든 업무와 작업은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III.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추구

- ❖ 자유로운 경쟁,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합니다.
- ❖ 모든 구성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회사의 관련 사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뇌물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습니다.



## IV. 거래 질서의 존중

- ❖ 거래에 있어서 수입 수출 통제, 통관 절차, 외국환거래, 무역제재와 관련한 국내외 법규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 V. 정보 및 기술의 보호

- ❖ 개인정보, 경영정보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등 내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 타인의 아이디어, 특허, 저작물 등 지식재산권은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합니다.
- ❖ 업무 관련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



# 01

##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



제품 안전 및 규격  
환경 안전에 대한 책임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 제품 안전 및 규격

# 제조물책임법 # 소비자보호법

- 제품의 설계, 제조, 검사, 마케팅, 사후관리 등 생산 및 판매의 전 단계에서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제품은 국내 외 법규, 국가별 품질/안전 인증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내부적인 품질 기준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제품 안전 및 규격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국가별 품질/안전 관련 인증 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자체의 품질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 각 국가별로 동일한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안전 인증 기준이나 규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양산-영업의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 협력사가 납품하는 원자재나 부품이 회사의 품질/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제품 제작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02. 품질 검사는 관련 사규 및 업무표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유리한 데이터만을 취하거나, 불완전한 조건 하에서 검사하거나, 검사 프로토콜을 임의로 간소화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03. 제품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품질 이슈가 발생할 경우 Recall 대응이 필요할 수 있고,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품질 문제로 Recall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규 상의 Recall Process에 따라 대응하고 그 외의 프로세스를 통한 이슈제기는 지양하여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안전 및 신뢰도를 지속 확보하도록 합니다.
  - 유관부서는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함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Check!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품질 이슈 Escalation 지침」, 「전사 위기관리규정」, 「리콜 대응 프로세스」 등을 확인하고 규성에서 정한 유관부서로부터 대응 절차 등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설계, 제조상 결함 또는 경고 문구 미비 등 표시상 결함이 확인될 경우 즉시 관련 사규에 따라 **위기관리팀**, **법무실 규제법무팀** 등 유관부서에 알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

•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제품 결함



T사의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로 인한 제품 결함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법무부로부터 10억 달러, 한화로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인해 경영 악화되어 파산함

# 환경과 고객 안전에 대한 책임

# 화학물질관리법 # 중대재해처벌법 # 폐기물관리법

- ‘고객가치 증대’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의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환경안전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화학물질 신규 등록 또는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인허가 갱신이 필요한 경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사용 회피 또는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사용 결정 시에는 유·누출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02. LG에너지솔루션이 생산하는 배터리 셀 등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 또는 사용자에게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 (이하 “중대시민재해 ” 라 함)를 예방하고, 고객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상의 유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03. 사업장 폐기물을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 배터리 등 폐기물은 국가별 폐기물 관련 법령 (Ex.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 RCRA\* 등) 에 따라 관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 \* RCRA : Resource Conservation & Recovery Act

- 폐기물 관련 법령 제 개정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한 사규에 따라 폐기물 처리 절차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 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한 경우, 계약조건 및 법적 책임이 LG에너지솔루션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해당 업체의 법규, 계약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 사업장의 설비 및 물질에 대해 환경안전 법규상의 인허가 요건 및 각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시설 및 설비 목록을 관리하고, 신규 설비·물질의 설치나 사용, 기존 설비의 변경, 물질 사용량 변경 등 사정변경 시 추가적인 인허가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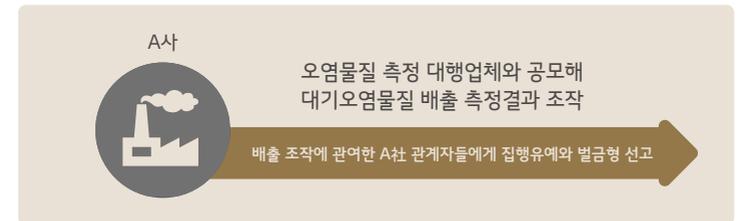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 화학물질 등록, 보관, 사용은 사규인 「**화학물질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필요시 안전보건팀 등 유관부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규인 「**중대재해예방 규정**」에 따라 대응 절차를 구축하고 예방 활동을 이행해야 하고 문의사항은 위기관리팀, 환경안전 부서 등으로부터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폐기물 인허가 취득, 처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사규인 「**폐기물관리요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대기 오염물질 초과배출 측정 결과 조작



-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먼지, 황산화물 등의 배출농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됨
-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 발행
- 배출 조작 관여자 형사처벌, 환경법 위반으로 녹색기업 지정 취소

## 기업정보의 투명한 공개

### # 자본시장법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LG에너지솔루션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관련 법령 및 한국거래소의 각종 공시제도에 따라 주요 경영활동 등 기업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회사운영이나 경영 재무 상태와 관련된 주요 경영정보는 공시되기 전까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에 따른 공시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시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시 전 누설/유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공시의무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적시에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사항의 사후변경 또는 번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02.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법인으로서 내부정보의 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해당 정보가 집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경영 또는 재산상환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도 구성원 개인이 이를 외부에 알리면 안되고, IR/홍보 부서 등이 관련 사규 상에 규정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경영정보는 회사가 이를 공시하거나 언론에 공개하기 전까지 반드시 기밀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사규인 「공시정보 관리규정」, 「정보보안규정」 등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IR 부서, 정보보안 부서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사업보고서 내 영업이익 등 허위공시



#### 사업보고서 등 허위공시로 인한 A사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였음



# 02

## 구성원에 대한 책임



공정한 인사 관리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안전한 작업환경

# 공평한 인사 관리

# 근로기준법 # 채용절차법 # 남녀고용평등법

- 구성원의 채용이나 진급 등 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업무의 특성, 개인의 경력, 성과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토대로 공평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채용, 승진 등에 있어 모든 구성원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받아야 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성적 취향, 장애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특정 요건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업무기술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상당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02. 채용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를 수락하여서는 안 됩니다.
  -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청탁 행위는 윤리규범 상 공평한 기회 제공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징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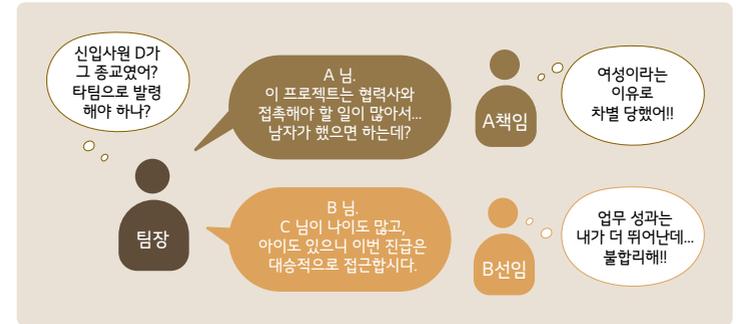
## Check!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사규인 「**채용규칙**」 등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인사 부서, 법무실**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비 업무적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 종교, 성별, 연령 등 비 업무적 사유로 인사 평가하거나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차별행위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지됨

## 상호 존중의 조직 문화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 동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동료나 직원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사규 및 관련법률 위반에 해당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준수 사항

01.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조롱, 따돌림, 차별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02. 직장 내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23년 LG에너지솔루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서베이 결과 특히 회식 자리에서의 성희롱, 괴롭힘 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언행과 행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성희롱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중징계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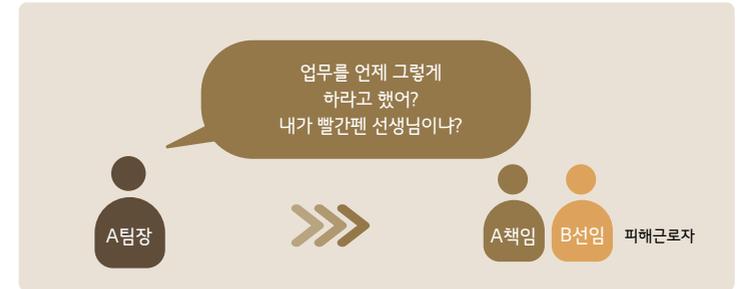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조사사무 처리기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신고는 ① **정도경영신고센터**(※ G-portal 상단) '**성희롱/괴롭힘 신고하기**' 또는 ② **정도경영신문고**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신고 가능)
- 정도경영 Portal 내 안내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별 문의사항은 **윤리사무국, 인사 부서, 법무실**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폭언 등 괴롭힘 행위 처벌 사례



- A팀장은 사무실에서 팀원들에게 폭언하고 팀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지속함
-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지도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되나, 팀원들에 대한 지속, 반복적인 폭언 및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이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음

# 안전한 작업 환경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형법

-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 예방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전파 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규정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준수 사항

- 01. 현장/사무직 등 모든 구성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안전 사고의 유형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회사의 안전수칙 및 응급상황 시 대응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아차사고 (Near-Miss) 요인을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고 예방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 근무 공정/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이므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끝까지 이행해 주십시오.**

  - 환경안전 사고 발생은 인지한 즉시 보고해 주십시오.
  - 사고의 근본 원인을 도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03.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끝까지 이행해 주십시오.**

  -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많은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구체적인 처벌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중요한 법적 의무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야 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사규인 「전사 위기관리 규정」, 「CIMS(Crisis management system)와 환경보건안전관리(EHS) 내 관련 사규 등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기관리팀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전, 환경 관련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상급자에 보고하고, ① CIMS (Cris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② 환경보건안전관리(EHS) 등을 통해 등록/보고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다수 사망사고 발생





# 03

##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추구



경쟁사와의 관계

경쟁 정보의 수집 / 유출

협력사와의 관계

금품제공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 경쟁사와의 관계

## # 공정거래법

- 국내 외 경쟁사 임직원과는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 경쟁사 (잠재적 경쟁사 포함)와의 각종 계약, 협약 체결 등 업무상 접촉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정거래팀 또는 법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수 사항

01. 경쟁사의 전 현직 임직원과는 개별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02. 경쟁사 임직원과 마주칠 경우 업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 각종 모임/행사에서 경쟁사 임직원을 만나게 되는 경우, 사적인 친분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내부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비밀/대외비 등 내부정보를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03. 경쟁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법률자문을 요청합니다.
  - 담합 (카르텔)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는 각 국가가 중복 제재하여 막대한 처벌이 부과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쟁사 관련된 각종 업무 수행 시 사전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4. 경쟁사와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연구개발, JV 등 계약 체결을 추진할 경우, 협상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검토 또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사와 특정 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내 외 경쟁법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법적 Risk가 발생하는지, 또는 기업결합 신고 등 절차와 의무, 제약사항 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세미나, 학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이 주체하는 각종 외부 모임에서 경쟁사와의 접촉이 예상될 경우, 사규인 「**경쟁사접촉관리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공정거래팀**의 피드백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조사기관 (정보중개회사, 컨설팅회사)과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사 정보, 업계동향 등 시장정보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전자결재인 "**정보수집 사전동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소속 팀장 결재 → 2차 담당임원 결재 → **3차 준법사무국 팀장 협의**
- 경쟁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담합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절차는 업무표준인 「**LG에너지솔루션 담합예방 가이드북**」을 참조하시고, 추가적인 질의는 공정거래팀 또는 법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당사의 JV법인은 동일한 사업목적 하에 운영되는 법인들인 동시에 시장 내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당사의 JV법인 간의 거래구조, 지배구조 변경 등 새로운 사업 형태를 고려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실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신기술에 대한 담합 제재

**R&D**

독일 경유차 제조사들은 배출가스(NO<sub>x</sub>) 저감기술(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관련하여, 보다 환경적으로 뛰어난 저감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경쟁제한적 합의(담합)를 하여 적발됨

- 통상적인 가격/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의 담합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특정기술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R&D 관련 합의를 담합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 (2023)
-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백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함

## 경쟁정보의 수집 / 유출

#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 시장정보의 수집 활용에 있어서 타사의 영업비밀, IP 등 침해가 문제되지 않아야 하며 경쟁사 뿐만 아니라 고객사나 구매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수집, 공유하는 행위도 지양하여야 합니다.
-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정보(대외비, 비밀정보 등)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사 간의 담합 Risk 뿐만 아니라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준수 사항

01. 경쟁사 전현직 임직원에게 경쟁정보를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 경쟁사 출신 경력직 채용 시 면접 단계부터 경쟁사의 영업비밀 침해가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당 임직원에게 경쟁사의 영업비밀 수집 또는 활용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02. 컨설팅 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정보수집 과정에서 경쟁사 전현직 임직원과의 인터뷰 등 직 간접적인 접촉이 발생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쟁사 전현직 임직원과의 직접 인터뷰는 가급적 지양하고 컨설팅업체가 직접 주관하여 인터뷰를 할 경우에도 담합,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03. 경쟁사 뿐만 아니라 고객사, 구매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을 수집하거나 수집 후 이를 해외법인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고객사, 구매 협력업체의 가격/매출원가/기술로드맵 등 경쟁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 후 당사 해외법인에 전파하는 행위는 고객사의 영업비밀 침해나 당사 및 당사 해외법인들의 구매 담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 특히 본사-해외법인, 해외법인 간 내부 경쟁정보 교환 시 고객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04. 국내외 경쟁사에 LG에너지솔루션 경쟁정보를 유출할 경우, 담합 Risk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회사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 유출),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임의로 정보의 수준/등급을 판단하여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정보를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 특히 컨설팅 업체나 경쟁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약속하고 경쟁정보를 유출할 경우, 엄중한 징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경쟁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로부터 경쟁사의 경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에도 제3자를 매개로 한 정보교환 담합 등 법적 Ris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수집 활동 시 수집하고자 하는 경쟁정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공정거래법, 법무실** 등에 문의하시고 관련 가이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장조사를 위한 컨설팅계약 체결 시 **법무지원시스템 "계약검토요청"**을 통해 불법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이후 계약한 컨설팅업체를 통해 경쟁사 임직원을 인터뷰 하고자 할 경우, 전자결재인 **"정보수집 사전동의"**를 진행하여 **법무실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해외법인, 해외법인 간 정보교환 시는 정보보안부서의 **「JV핵심정보 자료 공유 시 가이드**」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경영정보, 민감정보 유출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업무표준인 **「경영정보 유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시장정보 수집 금지



- 고객사, 협력사, 시장조사기관, 컨설턴트 등을 통해 경쟁사 대외비/비밀정보를 전달 받을 경우, 이는 불법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취득함에 따라 A사는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협력사와의 관계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상생협력법

- 협력사와의 거래는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 및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협력사와의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기존 거래조건 변경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준수 사항

- 표준계약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표준계약서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포함)에는 계약검토요청 진행하여 계약상대방인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한 약정이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가령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속거래", "일방적 계약 해지", "과도한 위약벌" 등 계약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약정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계약조건을 협상한 이력을 충분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날인한 계약서가 있더라도, 협상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사후적인 문제제기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경쟁 관계인 협력사들을 모아 놓고 거래처 선정, 물량 배분, 가격 협상 등을 논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낮은 단가, 유리한 거래조건 등 설정을 위해 여러 협력사들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경우 차별적 대우, 거래거절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주요내용 변경 또는 협력사에게 계약상 의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조건을 협력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협상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 특히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영세한 협력사에게 일정한 계약조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검토요청 절차를 거치십시오.
- 거래 종료는 계약상 합의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며, 특히 계약기간 중 해지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일부 협력사에게만 특혜를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및 LG에너지솔루션 윤리규범 상 '공정한 거래'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또는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주요 원재료(단가의10%이상 비중)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계약(또는 미도입 합의서)을 체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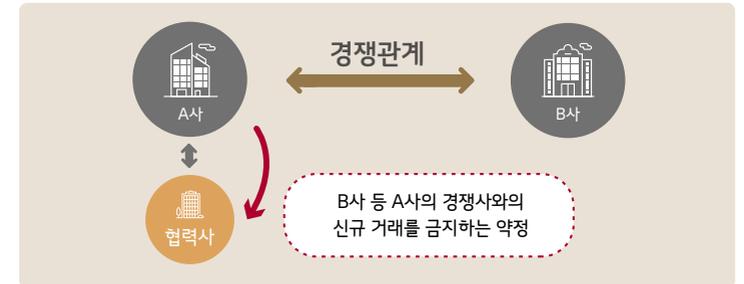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계약검토가 필요한 경우, 특히 표준계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표준계약서의 부동문자를 약간이라도 수정할 경우 반드시 법무지원시스템 '계약검토요청'을 하십시오.
- 협력사와 납품대금 연동 관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구매 관리 PRM 시스템(전자계약) 또는 법무지원시스템(서면계약)을 진행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공정거래팀 또는 법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협력사와의 거래 관계(계약체결, 이행, 거래종료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각종 법적 이슈가 예상될 경우에는 법무지원시스템 '법률자문 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경쟁사와의 거래 금지 약정



- A사가 협력사와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연구용역위탁 등을 진행하여 A사가 소유하고 있는 IP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협력사가 A사의 경쟁사인 B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위법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위법한 구속조건부 약정에 해당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자와 협력사가 체결한 구속조건부 약정의 법적 효력은 '무효'로 볼 수 있음

# 금품 제공 수수 및 부정청탁 금지

# 청탁금지법 #형법 # 美 FCPA\*

- 모든 구성원은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규 및 회사의 반부패 관련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국 공직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약속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반부패 관련 법률로 미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LG에너지솔루션 및 그 해외법인도 규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준수 사항

01. 공직자 등에게 직무관련성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어떠한 금품, 향응 등의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02. 국내외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뇌물 등 부패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중대범죄로 인정되므로, LG에너지솔루션 및 행위자인 임직원 개인은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03. 거래상대방 (기업, 개인)에게 부패 이슈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정부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 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의 반부패 이슈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 LG에너지솔루션 구성원이 협력사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 선물 등을 수수할 경우에도 사규에 따른 징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배임수재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05.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제공 등의 이슈가 없도록 채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하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사(Audit) 또는 거래 진행 중에 아래와 같은 반부패 관련 위험 신호를 포착한 경우 신속하게 **법무실** 또는 **정도경영**에 자문 요청하고 **당사의 부패방지방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요령 및 부패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 거래상대방이 실사 또는 거래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
- ✓ 거래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 회사와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거래상대방 또는 그 임직원이 당사 임직원과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
- ✓ 그 외 거래상대방에게 잠재적 법령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요인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청탁 관련 문의사항은 유관부서인 **정도경영, 법무실** 등에 질의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예외적으로 금품 지급 (Ex.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가능한 경우인지, 지급 기준은 어떠한지 등은 유관부서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반부패 관련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신 경우,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라도 **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공직자에 대한 불법 자금 제공에 따른 FCPA 위반

### K사

-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



↳ 美 해외부패방지법 (FCPA) 위반으로  
약 75억원의 과징금 부과

-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일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



# 04

## 거래 질서의 존중

수출입 규제

투명한 공급망 관리



# 수출입 규제

# 대외무역법 #관세법 #각종 Sanction

- 모든 구성원은 수입 수출 통제, 통관 절차, 외국환거래, 무역제재와 관련한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우리의 제품이 수출입 시 관련 법규나 Sanction에 따라 규제당국의 허가가 별도로 필요하거나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출통제 대상 제품을 LG에너지솔루션이 직접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상무부 등)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2. 수출 품목의 예정 또는 최종 목적지가 주요 제재 국가에 해당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자인 경우, 해당 거래 중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통관 절차 진행 시 국내외 통관 및 무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및 회사의 수출입 관련 사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04.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 국내 외 규제당국에서 요구하는 사전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05.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자에 등재된 자는 아니더라도, 제재 대상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지양해야 합니다.
  - 부득이 거래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과 무관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관련법규 준수 약정서 (Sanction Compliance Statement)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수출통제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통관지원시스템 (CCS)**에서 확인하시고, 특히 신규 수출 품목은 **통상관세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환 거래의 경우 **통상관세팀, 자금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법규는 G-portal 내 **Compliance Portal** 의 '**Compliance 관련 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제재 대상 국가로 수출된 제품



- 국내 P사는 미얀마에 제재 대상 물품인 군사용 목적의 상륙함을 판매함
- 판매 과정에서 제재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설계서류의 내용을 군사용 목적이 아닌 대민지원 목적으로 위조함
- P사 담당자 및 수출을 허가한 방위사업청 관계자, 대외무역법 등 위반이 문제됨

## 투명한 공급망 관리

우리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원부재료는 원산지, 산출 경로, 재활용 비율 등에 대한 국내외 법적 의무 또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모든 구성원은 우리의 제품에 분쟁 지역에서 채굴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 분쟁광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02. 분쟁 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美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UN ILO 105호 협약 등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으로 산출된 광물이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의 원재료로 쓰이지 않도록 협력업체 공급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美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 '22.6월 제정되었으며, 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② 동 법에 따른 거래 제한 대상에 등재된 단체 또는 기업이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추정(Presumption)하며, 회사가 해당 제품이 동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내 반입을 전면금지'하고 있음

03. 고객사의 ESG 공급망 가이드라인 등 고객사가 요구하는 배터리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의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LG에너지솔루션의 위반 이슈가 없도록 협력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천하도록 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협력사에 대한 공급망 관리체계 적정성 검증, 정기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표준인 「LGES 공급망 실사 프로세스」를 참조하십시오.  
- 아울러, 협력사와 거래 시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공급망 관리를 위한 LG에너지솔루션 정책, 협력사에 대한 실사, 원산지 등 공시 의무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통상관세팀, 구매 SRM팀 및 ESG추진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분쟁광물 지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법적 Risk



- 분쟁광물 지역에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부품을 만든 A사가 이 사실을 모르는 글로벌 기업 G사에게 부품을 납품하였음
- 인권보호 NGO는 G사 제품이 분쟁광물 지역에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취득한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UN에 제재를 요청하였음



# 05

## 정보 및 기술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

타인의 지식 재산 보호

경영정보 보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기록 관리 및 보존

정보통신수단 이용 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개인 연락처, 사진, 이메일 등)의 무단 이용 및 누설 등을 하지 않아야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국내 외 법규를 이해하고 관련된 회사의 사규 및 정책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인 제공자들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1.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공개 전에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별도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 업무와 관련성 없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는 저장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업무 목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해당 업무 종료 시 완전 삭제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해 알 필요가 없거나 제공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 일상업무에서 특별한 주의 없이 취급하는 일반문서, 자료, 이메일 등의 경우에도 특히 사내 외로 공유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삭제 또는 익명 변경 처리하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처리 위탁 등이 수반되는 신사업 추진 시, 먼저 관련 법규 상 의무 및 절차를 상세히 확인한 뒤 계약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상 LG에너지솔루션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 이용 제공하는 주체인지,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받아 수행하는지에 따라 법적 의무 및 절차가 달라집니다.
  -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는 국가마다 다르므로 (Ex: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유럽 GDPR, 미국 CCPA 등)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예상되는 경우 관계 법규 상 의무 및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heck!

- 상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요령」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안 부서, 법무실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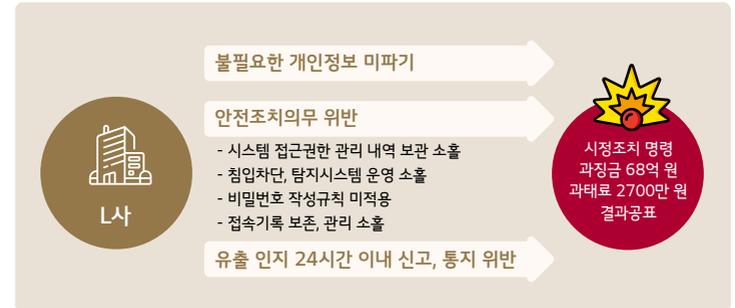
## 관련 사례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 고객 등에 안내사항 등을 개별 발송하거나 대량 메일 전송시스템(EON) 등을 활용하지 않고 대량메일로 발송하면서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사내 외 다수의 수신자들에게도 고객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 유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미파기, 안전조치의무 위반, 유출통지, 신고 의무 위반



- 이동통신사 L사가 보관하는 개인정보 약 60만 건이 유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동조사단, 경찰 등의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개인정보 미파기, 안전조치의무 위반,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어 대규모 과징금, 과태료 과 부과되고 시정조치명령 및 결과공표가 이루어진 사례

# 타인의 지식재산 보호

## # 부정경쟁방지법 # 특허법

- 제3자의 영업비밀 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과 같이 공개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권리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경우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제3자의 영업비밀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서는 안 되고, 정당하게 취득하더라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02. 제3자가 보유한 디자인, 저작물 또는 기술자료는 반드시 사용 권한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하며, 권한의 내용, 범위 및 조건 등이 LG에너지솔루션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령, 인터넷 상의 사진, 음원, 영상물, 기타 저작물이라도 라이선스 관련 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 특히 타사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라이선스를 부여받고 해당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라이선스 상세 계약조건을 숙지하시어 계약 위반이 문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지식재산의 공개 또는 활용 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령, 비밀유지계약 (NDA)을 체결하고 받은 지식재산의 경우, 특별한 조건을 두지 않은 이상 해당 비밀유지계약과 관련된 프로젝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04. 신규 투자 또는 사업 추진 시 제3자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특허라이선스팀 등 유관부서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 협력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유용



-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협력사의 영업 비밀, 기술자료를 임의로 타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 개별 계약 위반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하도급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경영정보 보호

### # 산업기술포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 경영정보란,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두, 서면, E-mail,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받거나 알게 된 또는 업무 수행 중 생성된 모든 정보로서 유 무형 여부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 준수 사항

01. IR부서, 홍보 등 회사의 공식적인 대외창구를 거치거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외에는 회사 외부로 경영정보를 전달, 공개,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유출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민 형사상 제재 및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심각한 평판 Risk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력문서, SNS, 단체 카톡방, 인터넷 게시판 및 구두 상으로도 경영정보 유출은 엄금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됩니다.
02. 경영정보는 허락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구성원 본인에게 접근 권한이 없는 경영정보는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 LG에너지솔루션의 구성원이라도 특정 경영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경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권한에 따라 취득한 회사의 경영정보의 경우에도 목적 범위를 넘어선 유용은 금지됩니다.
03.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영정보 역시 법규 및 상대방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업무표준인 「**경영정보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IR부서, 홍보**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자문중개회사를 통한 경영정보 유출



- 직원이 자문중개회사로부터 회사의 신규 투자 계획, 각종 기술자료 등 경영정보를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등 정보 유출 행위를 한 사안에서 징계하고 및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사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 # 자본시장법

- LG에너지솔루션 또는 관련 회사 (계열회사, 고객사, 협력사, 프로젝트 상대방 및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미공개 정보를 개인이나 가족의 주식투자에 이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고, 단기매매차익 등 부당이익은 환수됩니다.

\*미공개 정보 : 신규 연구 개발, M&A, 추정결산실적 정보 등 투자판단 영향 정보 등을 의미하며,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악재성 정보도 포함함

## 준수 사항

1. 업무상 직 간접적으로 회사 또는 파트너사의 미공개정보를 알게된 경우 이를 이용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이 관련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는 퇴직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회사가 사업 관련 중대발표를 앞둔 시점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로 오인될 여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해당 유가증권의 거래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출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에 해당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미공개 중요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언론, 규제기관 등으로부터 회사의 경영 재무상태, 의견제공 등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유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여 해당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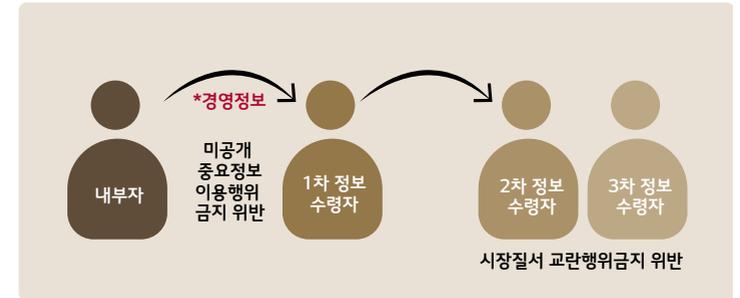
## Check!

- 미공개 정보 이용의 가부 등은 **법무실** 등 유관부서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IR부서, 홍보**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관련 사례

###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에 유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징역 (1년 이상) 또는 부당이득액/손실회피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에 처하고, 회사에 대하여는 양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아울러 이로 인하여 해당 주식 등을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에 따른 책임 또한 발생

## 기록 관리 및 보존

- 경영목표 및 전략설정의 토대가 되는 회사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철저히 관리 및 보존되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부서별 문서정책에 따라 보존연한을 다한 기록은 원본 및 모든 사본을 파기하고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빠짐 없이 삭제하십시오.
02. 회사 정책에 따라 폐기해야 할 기록 및 그 사본의 경우에도, 관련 법규 또는 회사의 소송, 조사 등 법적 대응 과정에서 문서보존지시 (Litigation hold) 등에 따라 일정기간 보존 의무가 발생한 경우, 폐기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문서 보존 안내문 등에 따라 철저히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절차 대응 시 법무실에서는 유관부서에 문서보존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기록의 존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문서보존 안내문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회사의 방어권 행사 및 법적 손해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03. 업무 인수인계 시 관련 기록 일체 및 이에 대한 관리 업무 또한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 관리 및 보존 담당 변동이 발생할 경우 팀, 담당 단위로 기록 관리의 공백,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안 부서, 법무실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문서보존지시 위반



- A사가 B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통보를 함에 따라 소송 등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B사 내 이메일 자동 삭제 기능을 해제하지 않아 이메일이 삭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B사가 문서보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A사에 유리한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함

## 정보통신수단 이용 시 유의사항

- 정보통신수단 및 관련 기술의 활용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내재된 위험요소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 준수 사항

01. 구성원은 업무 관련 정보 처리 시 원칙적으로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인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처리 시 회사 기밀을 취급하는 것에 준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회사의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저장된 자료는 모두 회사의 소유물이므로 회사는 이를 조회, 삭제, 타인에 제공, 타 용도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자료도 포함됩니다.
02. 이메일, 문자, 메신저 내용을 전송하기 전에 항상 면밀히 검토하십시오. 사소한 편집 실수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장, 특히 법적 권리의무에 관한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회사가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03. 회사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근 열람 사용 권한이 없는 자료, 차별적이고 성희롱적 요소가 있거나 기타 타인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자료,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포함되었을 수 있는 자료 등에 접근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전송 및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heck!

#### 사 내 규 정 유 관 부 서

- 상세 내용은 사규인 「정보보안 거버넌스 규정」을 확인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보보안부서 등 유관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례

- 개인 정보통신수단에 업무 자료 저장, 반출



- 개인 정보통신수단 반입이 금지된 사업장에 개인 정보통신기기를 무단반입 후 대외비 등 자료 저장, 외부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사안에서 중징계 및 업무자료 삭제 등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

---

## LG에너지솔루션 준법지침서

발행일 2024년 6월 00일

발행인 LG에너지솔루션

편집인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 / 준법사무국

Copyrighting@ LG에너지솔루션/법무실/준법사무국 | 발행일 2024.6.00.

본 지침서는 LG에너지솔루션 구성원들의 업무 활용을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복사, 배포, 사용 등을 금합니다.

